

청주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나532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나53253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0가단693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건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전희태

변론 종결 2022. 9. 1.

판결 선고 2022. 10. 27.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0가단693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충북 보은군 H리(이하 'H리'라 한다) D 답 2,058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1.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중 "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1행 "2. 판단"과 3쪽 1행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3. 2. 4.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가등기 서류를 보관하게 됨으로써, 당시 C이 채무초과 및 무자력 상태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유일한 재산임을 알았는데, 그 이후 2020. 8.경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C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5. 9. 21.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위 상당한 기간을 2015. 9. 21.경으로부터 2~3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3. 2. 4.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가등기 서류를 보관하면서 C이 채무초과 및 무자력 상태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5. 9. 21.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을 온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3쪽 아래에서 8행부터 6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및 부친 I(2017. 1. 20.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도 알 수 없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선조들 분묘가 있는 J 임야(이하 '피고 임야'라 한다)의 진입로 목적으로 상당한 가격으로 매수하여 현재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다14539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다247996 판결 참조).

나)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의 K조합 보은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 증조부가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 임야에는 피고 선조들의 분묘가 있다.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 임야 사이에는 지목이 구거인 M 토지가 있으나, 현황은 구거나 통행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망인은 피고 임야의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하던 중 L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고 C를 처음 만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르게 된 것으로, 망인이나 피고와 C 사이에 친인척 관계나 거래관계는 없었다.

여기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4,000만 원, 근저당권자 G인 근저당권만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망인이 그 당시 C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에 피고와 망인이 C의 채권·채무관계를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2) 망인과 피고는 피고 임야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로는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위로는

구거를 거쳐 피고 임야에 닿을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이후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도로로부터 피고 임야에 이르는 진입로를 개설하여 피고 임야를 통행하며 선조의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

3) 면적이 2,058㎡(약 623평)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은 6,000만 원이다. 이에 관하여 매매를 중개한 L은 평당 10만 원으로 하여 6,200여만 원에서 에누리를 한 것이라고 하고, 원고도 2021. 11. 24.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와 제1심 변론종결일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가 6,000만 원 가량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위 매매대금 6,000만 원은 시세의 적절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과 피고는 위 매매대금 6,000만 원 중 600만 원은 계약 당일인 2015. 9. 1. C에게 송금하였고, 잔금 5,400만 원은 2015. 9. 15. 망인 명의 계좌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4매로 4,000만 원, 100만 원 권 수표 13매로 1,300만 원, 현금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여 L 등이 보는 앞에서 C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은 2015. 9. 15.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날과 같은 날 말소되었다.

4) C이 2005. 8. 22.자 매매예약과 2015. 7. 7.자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N(2021. 9.경 사망)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데, N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보인다. N의 아들인 O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부탁받아, 이를 당시 광고업을 하며 마을 사람과 교류가 많던 L에게 이야기하였고, L은 피고 임야 근처의 토지를 매수하려던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5) 피고는 처음에 매매잔금 중 4,000만 원은 G의 계좌로, 1,300만 원은 C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예금거래내역서 2015. 9. 15.자 거래내역의 '대체'라는 기재를 보고 위 돈이 이체된 것으로 오인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8,000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와 망인에게 그보다 저렴한 가격인 6,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점, 수익자인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부모인 망인과 P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은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 반복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여지가 더 크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송인권

판사고진흥

판사성찬용